

#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안내

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을 시행하여 지역청년의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01월 20일

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

## I 사업목적

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 도모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- 사업기간 : 2025. 01. ~ 12.
- 모집규모 : 청년 신규 채용 230명(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)
- 지원대상

**유형 I.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**
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

**유형 II.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**

※ 빈일자리 업종

- 제조업 :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
-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: 관계부처에서 빈일자리 업종으로 통보받은 사업장

- 지원내용 :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 
 유형 I. 월 60만원(1년차), 최대 1년간 720만원 기업에 인건비 지원  
 유형 II. 2년 근속 시, 인센티브 480만원 청년에 추가 지원(2회에 나눠 지급)
- 지원한도 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 
 피보험자 수의 100%까지 지원
- 관할지역 : 부산광역시 금정구, 동래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
### III 지원내용

#### □ 참여대상

- 기업 :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 
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(참여기업 요건\* 참조)

**참여기업 요건\***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
- ※ 단, 지식서비스 관련 산업,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업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
- ②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,900만원 이상인 기업(업력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)
- ③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한 경우

※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

- 사업 참여 3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참여불가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, 임금 체불 사업주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

- 청년 :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(참여청년 요건\*\* 참조)

**참여청년 요건\*\***

- 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- ②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(유형 I의 경우 1가지 이상 충족 필수)
  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/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/
  - 국민취업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일경험·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취업 청년 /
  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/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/
  -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/ 북한이탈청년 /
  -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/ 자립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/
  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

※ 지원제외 청년

- 채용일 기준 사업주(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단 거주, 영주, 결혼이민자는 가능)
-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(졸업예정자, 휴학 포함) 중인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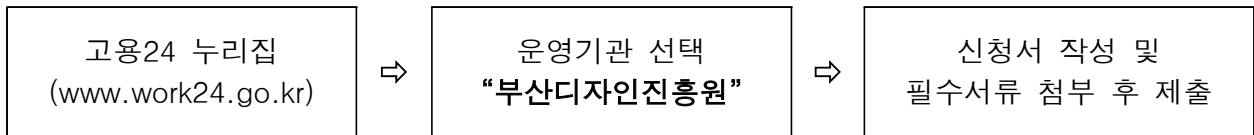
□ 지원조건

- 채용조건 :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
  - 2024.01.01. 이후 신규 채용 하여야 함
  - ※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의 정보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
  - ※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
- 근로조건 : 고용보험 가입 필수,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, 최저임금 이상,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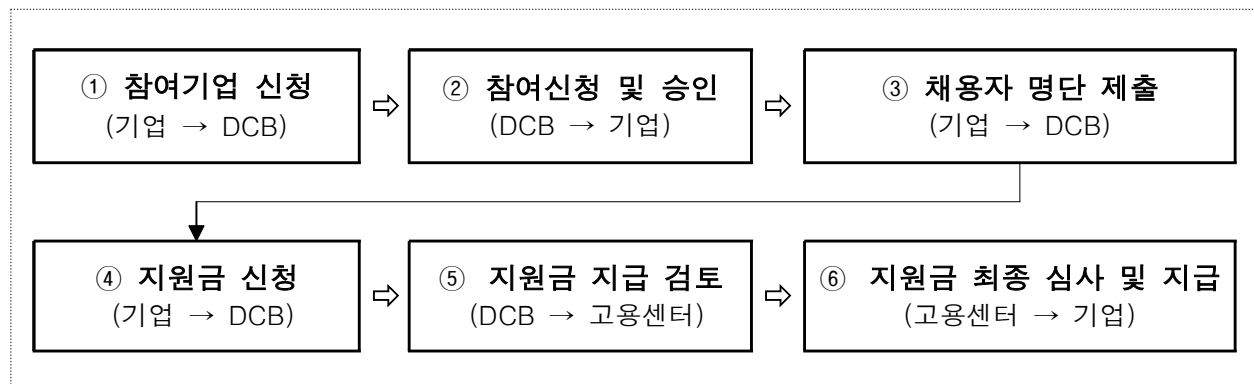
## IV 추진절차

□ 신청절차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고용24누리집)



- 진행절차 : 기업 참여신청 → 협약체결 →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
→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→ 고용유지 및 장려금 신청



○ 필수서류

참여기업 신청 (기업 → DCB)
<p>① 사업자 등록증</p> <p>※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참여 가능 입증자료를 필수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년창업기업 : 대표자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</li> <li>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</li> </ul> <p>② 연 매출액(2023년, 2024년 중 택 1) 증빙서류</p> <p>※ 국세청(홈택스)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법인, 개인사업자)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(면세사업자)만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법인, 개인)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, 고유번호증(비영리단체)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</li> </ul> <p>③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1)</p> <p>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</p>

참여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
<p>① 근로계약서 사본</p> <p>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(홈택스 온라인 발급)</p> <p>※ 홈택스 누리집 &gt; 민원증명 &gt; 사실증명신청 &gt;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</p> <p>③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</p> <p>(유형 I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&amp;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붙임2)</p> <p>(유형 II) 확인서(붙임2)</p> <p>⑤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</p>

○ 신청문의 :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자 ☎. 051-790-1081, 1086

- 붙임 1.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1부
2.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1부. 끝.